

공판준비 의견서

사 건 2015 고합 329 명예훼손

피 고 인 박유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박유하의 변호인 김향훈은 귀 법원의 2016. 4. 22.자 공판준비명령 중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의미”부분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입증취지와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의견”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의미

가. 석명요청 사항

귀 재판부의 석명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적시된 사실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힐 것

나. ‘주관적 의도’의 여부

피고인 박유하가 이 사건 고소인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고인 박유하는 한국과 일본간의 끝없는 강경한 대립을 풀어보려고 위안부 문제를 규명해보니 한국과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피고인이 고소인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얻을 ‘이익’이나 ‘동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적시된 사실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

그렇다면 이 책에 적시된 내용들을 사회통념에 비추어봤을 때 저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저자가 그동안 한일간의 문제에 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연구와 활동을 해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오랜기간에 걸친 연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도서가 발간된 것이기에 그 이전의 피고인의 연구활동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고의(故意) 내지는 범의(犯意)에 대하여

아래의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서문 뒷부분에 나오듯이 피고인은 이미 2000년도에 ‘세상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각을 내세우는 것은 학문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일반인과 일반 학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범의’가 있다고 해석하니 참으

로 어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기존에 있는 자들과 기존의 관
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고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모두 기존학자와
일반인에 대한 범의(犯意)를 가진 것인가요?

비록 형사범죄에서의 고의 또는 범의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외부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사건 피해자라 지칭되는 위안
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기존인식에 젖은 사람들(일반인과 학자들)의 반발이었
던 것입니다.

마.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3권의 저서

피고인은 오랜기간에 걸쳐서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연구하였고 그러한
연구성과를 담아서 2000년에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사회평론)라는 책을 출
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화해를 위해서’(뿌리와 이파리)라는
책을 펴내서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라는 한일간의 갈등의 핵심이 되
는 4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바도 있었고 여기에서 한 파트로
논의한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화해를 위해서’의 ‘위안
부 부분’은 그 전체를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2권의 저작이후에 본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여 2013년에 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입니다. 필자의 의도는 서문과
후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 3권의 책의 책 표지와 서문, 후기를 모두

복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바.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화해를 위해서는 서문 후기의 일부

이 사건 도서 발간 이전의 두권의 책 즉,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와 ‘화해를 위해서’의 2권의 책의 서문과 후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장들이 수차례 등장하는 바, 바로 이런 문장에서 피고인의 연구 목적과 집필 의도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한일 갈등의 해결과 화해의 모색이었고 이를 위해서 맹목적인 반일민족주의의 비판(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교과서, 위안부 등 한일간 갈등의 주요 4대 문제에 대한 연구(화해를 위해서),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2000년)

이제 나는 일본의 우익을 비판하는 일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2000년도에 이 책을 처음 펴낼 때 실은 돌아올 여파가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예상밖으로 호의적이었고,

세계인을 상대로 한일 양국이 함께 호스트 역할을 하게 된 2002년이 바로 그런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장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기를..

문제는 일본을 왜곡하는 일이 실은 우리 자신을 왜곡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내 관심사는 그저 타자와의 공존의 모색이었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는 일에 있었다.

한일간의 꽤 중요한 회합들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 동시에 책이며 메스컴을 통해 그 동안 축적된 상식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기도 했다.

귀국 후 나는 내가 알게 된 일본을 전하는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건 친일파로 보이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상식 있는 이들이라면 그 문제점들을 알 만한 왜곡된 담론들이 어느 샌가 많은 이들에게 진실처럼 회자되고 있었고,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만 중년의 성숙함으로 '상처'를 잊고 싶지 않은가. 상처에 거리를 두고, 피해의식에 기반한 혹은 정설화되어 있는 일본관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가.

화해를 위해서 (2005년)

제대로 된 비판은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비판의 대부분은 그러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또 이 책이 최종적으로 화해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화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일본정부는 7억엔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것이 '보상금'이 아닌 '의료복지'라고 못을 박았을까? 이 배경에는 1965년의 한일협정이 있다. 말하자면 그 때 '국가' 대 '국가'의 보상은 일단 끝났으니 다시 한번 '개인'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 1월에 공개된 '한일협정'에 관한 문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받

은 보상금을 한국이 일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개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신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써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써버린 포항제철을 비롯한 기업들도 (위안부에 대한 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는 결국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를 내던 5년전의 무모함을 또 다시 감행하기로 했다.

이제는 한국 내부에서도 일본 내부에서도 ‘사이’에서야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5년전의 고독보다 더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 하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유학한 내 운명이라 생각하며 빈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보낸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일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와 대상이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호명하기 보다, 일본의 누가, 한국의 누가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사고가, 내부/외부의 타자를 지배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도록 했는가를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 제국의 위안부의 서문과 후기 내용(이 사건 도서의 출간 의도)

위와 같은 연장선하에서 이 사건 도서가 출간되었고 그 서문과 후기 및 책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식민지의 가난한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제국과 국가와 전쟁 군대 남성이라는 각종 폭력과 힘의

메카니즘의 피해자가 되어 간 과정을 분석해가는 노력이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2013년)

이미 8년전의 책에서 나는,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사죄와 보상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위안부들이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지원단체는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20년 동안에는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지원단체의 의견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도 한국의 교과서는 '결국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일 수가 없다.

이 책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의 상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셈이 된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 언젠가는 이 책이 ~ 동아시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화해를 위해서'는 반은 위안부 문제나 식민지배에 대한, 이른바 '우익'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책이었다.

무엇보다도 최근들어 수요시위를 비롯한 정대협외 활동에 어린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는 상황은 극히 우려스럽다. 그들에게 새롭게 심어진 반일적 적개심을 넘어서 같은 또래의 일본 청소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감정소모의 시간이 필요할까.

정대협외 '운동'을 '거대한 국가적 소모'라고까지 느끼는 내 감성을 그저 친일파로 간주하려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화해를 위해서'의 위안부 부분의 말미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모든 논의를 주도하고 이슈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서문에서부터 그 점을 매우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들 단체가 사태해결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이들 단체(나눔의 집)가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하여 이번 재판에 이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정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서문과 후기에서 나타나는 집필 의도를 보면 결코 피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결코 일본제국주의를 두둔하거나 또는 위안부할머니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으로 표현되는 아주 단순한 현상이거나 그 모두가 일본군인들의 총칼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과 현상과 그리고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여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유하의 출간의 이유는 이 사건 도서의 뒷표지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위안부 문제는 왜 20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는가
이책은 그 원인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 ‘복잡한 구조’를 해부한다.**

- * ‘강제로 끌려간 20만명의 소녀’라는 인식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업자의 소거, 예외적인 사례의 일반화된 수용에 의해 만들어진 상이다.
- *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지배와 가난과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고,

그들의 체험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

- *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의식되지 않았던 ‘죄’와 이미 존재하는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구분해서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국가의 세력확장)의 문제로 다루었다. 근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위안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생각해본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에 존재하는 ‘미군기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냉전적’ ‘좌우갈등’이기도 하

다는 것이 이 책의 또 하나의 결론이다. 나는 그런 상황을 모두가 함께 보는 일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풀고 제국과 냉전이 남긴 문제들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동아시아’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다. - 후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원고 할머니들을 둘러싸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눔의 집과 정대협이 존립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고소인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비난은, ‘<군인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인식, 일본이 사죄와 보상을 한 적이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인식을 오랫동안 언론에 흘려 이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오해를 키웠고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 반발한 해당 지원단체가 이 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들의 체험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

피고인 박유하가 책 뒷표지에 쓴 것과 같이 ‘위안부들의 체험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단일한 기억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피고인의 견해가 우리 정부와 일본에서 발견된 공문서 그리고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 그리고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견해에 반하기 때문에 기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는 무릇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학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대로라면 각국 정부의 기본적인 의견이나 유엔 소위원회의 입장에 반하는 듯이 보이는 내용의 저작을 발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단순한 발상입니다.

피고인은 다양한 기억과 체험을 가지는 위안부들의 경험을 그대로 담아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결코 일부의 경우를 확대하여 전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대중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 관한 어느 학자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 학자들은 학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어오던 기존 관념과 배치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그것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회의주의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선조 갈릴레오가 대중과 교회의 믿음에 대항할 때 가졌던 신념이고, 아인슈타인이 절대론자들에 대항했던 신념이고, 양자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 대항했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유하 교수는 인문학,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여러 자료, 증언들을 수집하여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및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친일 교수’라는 프레임에 걸려 대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존 인식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특히 그것이 인문, 사회과학 분야일 경우,

프레임을 짜 놓고 조여오는 대중들에 의해 쉽게 공격을 받습니다.

보통 이런 공격에 학자들은 학문적, 논리적으로 설명/방어 위주의 대응을 하며, 그것이 박유하 교수가 현재까지 해 온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극히 옳은 방법입니다만, 문제는 차분히 설명을 듣고, 그것이 잘못된 기존 관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달려드는 군중에 의해 학자가 치명상을 입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윤이 좋아야 후세가 되어 복권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단일화된 기존의 통념을 믿고 있는 국민의 인식을 등에 업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지원단체에 대하여 회의적 방법론을 시도했던 피고인 박유하의 진지한 모색, 즉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한일간의 이해를 촉진하고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중의 통념(지원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일한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박유하의 고의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이러한 대중의 통념을 내면화한 결과, 통념을 만들어 온 지원단체에 사법부마저 휩쓸린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학자로서 일본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기존통념을 의심하고 원점에서 바라보려는 방법론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그 관념을 정착시킨 지원단체의 심기를 건드려 형사범죄의 고의를 가진 자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차. 소 결

위와 같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도서의 집필의도는 오랜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이른바 지원단체가 모든 논의를 주도하고 심지

어 정부조차도 이들 단체에 끌려다니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집필의도는 기존의 도서의 서문, 후기 그리고 이 사건 도서의 서문 후기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들 문언의 객관적인 서술태도를 보고 일반인이 보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이 위안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그를 통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을 드리고자 하는 강한 정열을 가졌을 뿐,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2. 신청증인에 대한 입증취지와 의견

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입증취지(이 사건 쟁점과의 구체적 관련성)

(1) 유희남

위 사람은 이 사건 고소인중으로 한명으로 되어 있고 위안부로 정부에 등록된 사람이기에 일제 시대 위안부로서의 생활 기타 정황을 상세하게 증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안부로 가기까지의 상황, 고발까지의 심경등을 증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위 분은 비교적 건강이 괜찮은 분으로 사료되기에 증

언을 할 상태는 된다고 생각되며, 그동안의 민사재판 일정에도 2~3차례 나와서 참관하신 적도 있습니다.

(2) 이옥선

역시 이 분도 위안부로 등록되신 분으로서 유희남할머니와 같은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일출

이분은 최근 영화 '귀향'의 소재가 된 '태워지는 소녀들'이라는 그림을 그린 분으로서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용수

역시 마찬가지로 위안부할머니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김군자

이 분도 위안부로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은 분이며, 유엔에 증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을 증인신청하는 이유**

위 5분의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각 분들마다 가게 된 경위와 생활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위안부의 상황을 모두 다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박유하가 이사건 도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들의 체험은 하나가 아니었다’ 즉 각자 다양한 경로로 갔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소녀위안부의 기억만 가지고서는 한일간의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여러분의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아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5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6) 아사노 토요미 교수

아사노 토요미 씨는 1964년생으로서 일본의 와세다대학교수이고 위안부관련 일본정부 및 미국무성 자료를 분석수집하기도 한 학자입니다. (첨부 아사노 토요미교수 약력 및 연구실적 참조)

또한 첨부한 동 교수의 논문 “[윤남 버마 최전선의 위안부들 - 죽은자는 말한다.](#)”는 버마에서의 위안부들 관련 논문으로서, 미국무성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견한 사진과 심문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논증한 것입니다. 임신한 위안부사진등 한국에서도 위안부문제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유통되는 사진들은 아사노교수가 발굴한 것입니다. 기소이후, 아사노 교수는 당시 발굴한 자료 중 미발표 자료를 피고인 박유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 분석한 이 분야의 권위자인 바 위안부 모집과 현지에서의 생활상등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증언할 수 있는 객관적 인물이라고 사료됩니다.

(7) 박선아 교수 (변호사)

위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 도서를 검토하게 하여 민형사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할머니들의 진술경위에 대하여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희남할머니의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에 도움을 주고 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전개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고소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법적조언을 한 경위 과정들에 대한 신문과 규명이 필요합니다.

(8)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위 사람은 고소인 할머니들 대부분이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고소에 직접 관여한 사람입니다. 역시 위 박선아교수와 함께 유희남할머니의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에 도움을 주고 관여한 사람입니다.

안신권은 이 사건 전개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고소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신문과 규명이 필요합니다.

나.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의견(이 사건 쟁점과의 관련성 유무)

(1) 양승봉 변호사

위 사람은 관련 민사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한 사람으로서, 고소인 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특별히 증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고소인측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 신운용 박사

검찰에서 신청한 신운용이란 분은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였을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민사소송과 각종 모임에서 원고측, 고소인측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위안부 관련 사료발굴이나 연구실적이 없는 분을 단지 ‘공부만 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론은 고소인측을 대리한 박선아, 양승봉 등 변호사들이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 (2000년, 사회평론) - 책표지, 머리말, 에필로그
2.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 - (2005년, 뿌리와 이파리) - 책표지, 머리말, 위안부 기술 부분, 나오면서

3. 제국의 위안부 (2013년, 뿌리와 이파리) - 책표지, 서문, 후기
4. 아사노 토요미교수 약력 및 연구실적 (위키디피아 번역본)
5.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자료집 사진
5. 아사노 토요미 교수 논문 - “운남 버마 최전선의 위안부들 - 죽은자는 말한다.”(버마에서의 위안부들 관련 논문으로서, 미국무성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견한 사진과 심문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논증한 것입니다. 아사노 교수는 당시 발굴한 자료 중 미발표 자료를 피고인 박유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16. 5. 16.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향 훈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 중